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녹지 1153.14- 46	(전화번호 362-4568)	전결규정 3 초 1 항 국 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지행일자					
보존년한					
보조기관	녹지국장	전결	법무담당관 심사필		
	녹지과장				
	보호계장	30			
기안책임자	유금종	80. 6. 6.	고시제 204호		
경유 수신 참조	관안참	발	시 장		
제목	보호수 지정 해제				
(제1안) 내부결재					
1. 도봉구청장 및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요청된 보호수 지정 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산림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해제코자 합니다.					
가. 다 음					
지정번호	지정년월일	수종 및 수령	금회조치	사	유
제34호	68.7.3	은행나무 900년	해제	부분고사	낙지위협
제40호	"	느티나무 2주 200년	1주 "	완전고사	
제43호	"	" 300년	존치	부분고사	(보통공사)
제48호	"	회화나무 2주 800년 및 3주	존치	"	(")
첨부 : 고지안 1부					
제2안					
수신 도봉구청장					
참조 녹지과장					

제목 동 건	
1. 녹지 1152-11712 (80. 5. 21)호와 관련됨.	
2. 전호로 요청한 보호수 제34호 지정 해제에 대하여 위험 고사지 제거 시 보존 가치 상실로 벌칙 고사문과 같이 해제 하였기 통보 하나	
가. 위험 고사지는 조속히 제거하여 낙지로 인한 인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함것이며	
나. 포식은 회수 보관 토록 함것.	
첨부 : 고사문 사본 1부. 끝.	
제3안	
수신	마포구청장
참조	산업과장
제목 동 건	
1. 산업 1153-440 (80. 3. 3) 및 산업 1105-1031 (80. 6. 1)호와 관련됨.	
2. 전호로 요청한 지정 보호수 지정 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지시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함것.	
가. 보호수 제40호 느티나무는 2주중 고사본 1주 지정 해제 하였으며	
나. 보호수 제43호 및 제48호는 기 통보한 바와 같이 (녹지 1153.13 (80.5.15))	
보정공사 대상목으로 부분 고사지를 정리 할 위계이니 관리에 철저를 기함것이며	
다. 기해제 통합된 (72. 10. 12) 지정 보호수 제42호의 포식이 현지에 방지되어있으니 이를 회수 보관 함것.	
첨부 : 고사문 사본 1부. 끝.	
제4안	
수신	공보심장
발신 : 녹지과장	
제목 동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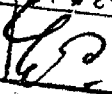
1.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적 보호수를 해제하였
기 통보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고 사 (안)

서울특별시지정 // 호

노거수 지정 해제

심사	1980. 6. 5	재시	9
담당자	김제재장	인주함관	
			

산림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목을 노거수 지정 해제 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1980. 6. 5.

서울특별시장

구 분	1	2
지정 구분 및 번호	노거수 34호	노거수 40호준 1
소재지	도봉구 미아동 681	마포구 합정동 101
소유	마을공동	사유
해제 사유	부분 고사 및 낙지위험	자연고사
해제년월일 및 해제기관	1980. 6. . . 서울특별시장	1980. 6. . . 서울특별시장